

광명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정 2025. 3. 27 의회훈령 제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의 적용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직 공무원”이란 광명시의회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
2. “대외직명”이란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직종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2. 대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

제4조(대외직명) 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의회 홈페이지,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